

러시아연방헌법(안)

1993. 10.

연구자 : 문준조(수석연구원)
최철영(선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외국법제동향분석」은 외국법제의 해설과 입법동향의 소개를 통해서 국내입법관계자의 입법활동과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법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 및 일반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목 차

○ 러시아聯邦憲法(案)	5
〈解 설〉	5
○ 러시아聯邦憲法(案)(全文)	8
第 1 編	8
第1章 總 則 人間의 權利와 自由	8
第2章 러시아聯邦市民	14
第3章 러시아聯邦	18
第4章 러시아聯邦大統領	23
第5章 聯邦議會	26
第6章 러시아聯邦政府	31
第7章 裁 判	33
第8章 地方自治	36
第9章 憲法의 修正과 改正	37
第 2 編	37
○ 『러시아聯邦의 聯邦國家權力機關과 러시아 聯邦을 구성하는 主權共和國權力機關과의 管轄對象 및 權限의 分配에 관한 條約』 ..	37
○ 『러시아聯邦의 聯邦構成國家權力機關과 러시아聯邦의 地方, 州, 모스크바市, 상트페테스부르그市의 權力機關과의 管轄對象 및 權限의 分配에 관한 조약』	42
○ 『러시아聯邦의 聯邦國家權力機關 및 러시아 聯邦을 구성하는 自治州, 自治管區의 權力機關과의 管轄對象 및 權限의 分配에 관한 條約』	48
第 3 編 經過規定	53

○ 러시아聯邦憲法(案)

〈해 설〉

1993년 7월 12일 러시아연방내 88개지역을 대표하는 7백5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制憲議會는 보리스엘친 러시아연방대통령이 제안한 새 聯邦憲法草案을 채택하였다. 이 헌법안은 연방대통령이 비교적 강력한 집행권을 가지는 연방제를 내용으로 함과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에 대하여 일정한 제약과 법의 지배를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바, 대통령의 강력한 집행권은 궁극적으로 聯邦憲法裁判所에 의하여 담보되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한 특징은 공화국·지방·주·자치주·자치관구 등 聯邦構成主體에게 상당한 정도까지 자치권과 연방에서의 대표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서방국가 학자들은 이러한 헌법안의 규정이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의 불가침성까지 보장하는 등 서구 자본주의국가 헌법과 다름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토지의 개인소유를 금지시킨 브레즈네프憲法과의 결별을 의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현행법은 憲法의 制定 또는 改正을 인민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인민대의원대회가 새 헌법안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 국민투표로 새 헌법안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헌법안이 헌법상의 기구가 아닌 엘친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에 의해 주도된 제헌의회에서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헌법의 효력발생을 위한 적법절차의 결여를 노정하는 것이다. 제헌의회에 의한 새 헌법초안은 러시아연방의 현행법에 따라 人民代議員大會의 의결 또는 國民投票의 절차를 통해 러시아 연방의 새로운 헌법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보리스엘친 러시아연방대통령은 오는 12월 12일 실시될 예정인 새로운 연방의회선거와 함께 여기에서 소개되는 헌법(기본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병행하여 실시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헌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강력한 大統領制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헌법의 최고 수호자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권력자이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러시아연방의 주권 보호, 독립 및 영토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대통령은 고위관료의 임명권 또는 그 후보자의 지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군대의 최고통수권자이다. 그러나 연방고위관료의 임명권은 의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행사한다. 연방각료는 연방정부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연방정부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 대통령은 연방의회의원의 선거일을 지정하고,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의장 및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관료후보와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연방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일정한 사항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가의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국가반역죄를 범한 경우에는 국가의회에 의하여 탄핵소추될 수 있으며 탄핵여부는 연방최고사법존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대통령의 유고시에는 연방평의회의 의장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며, 연방평의회의 의장도 유고된 경우 연방정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이 있는 국가의회의 의장은 제외된다.

□ 兩院制 議會

입법부는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공화국과 지방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국가의회과 선거구에서 선출되어야 하는 의원으로 구성되는 연방평의회이다. 양원의 선거는 4년마다 동시에 실시된다. 헌법은 지방행정조직에 광범한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지방행정조직은 연방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공화국·지방·주·시·자치주·자치관구와 같은 지방행정조직은 자신의 영토내에서 활동한다.

□ 經濟의 安定化

옐친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신임도를 묻는 국민투표의 결과가 확정된 지 2일이 경과한 1993년 4월 29일 정부 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은 지도자로서의 개혁프로그램을 발표하였는 바, 여기에서 국민투표후의 시대를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을 창출하는 시대로 규정지은 바 있다. 옐친대통령은 인민대의원대회(Congress of People's Deputies)를 겨냥하여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혁명은 국민이 그것을 받아 들인다 할지라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으며 중지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선동가의 시대는 지나갔으며 재정·금융상의 안정이 정부의 가장 절실한 과업임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루불화를 점진적으로 안정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 土地改革立法과 私有化

러시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토지개혁도 아울러 추진될 것이다. 옐친대통령도 지적한 바와 같이 토지개혁은 연방이 소유하는 토지를 실제로 시민에게 양도하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개인농장 등 모든 형태의 경작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소규모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voucher방식의 사유화프로그램을 가속화시키겠다는 것이 옐친정부의 기본방침이다.

□ 地方分權化

새로운 헌법안은 러시아와 소련의 전통인 극단적인 중앙집권화를 폐지하고 지방분권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수직적이고 경직된 중앙집권화는 과거 소련의 전철이 말해주듯이 결국 러시아연방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시장경제의 정착에도 장애가 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게는 자신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제정책을 아무런 제한없이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다. 1992년에 체결된 연방조약에 그 윤곽이 드러난 연방주의의 제원칙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러시아聯邦憲法(案)

〈全 文〉

러시아연방의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민은,
자신의 국토에서 공동의 운명에 의하여 통합되었으며,
조국에의 사랑, 선과 정의에의 찬란한 신념을 우리들에게 전수하여준 선
조의 사상을 고려하여,
자유, 인권, 윤택한 생활, 시민적 평화와 협조를 확립하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일체성을 유지하며,
러시아를 부흥시켜, 민주적 국가체제를 확고히 하고,
현재 및 미래의 세대에 대한 자신의 조국에의 책임에 입각하여,
자기를 세계공동체의 일부분임을 자각하여,
러시아연방헌법을 채택한다.

第 1 編

第1章 總 則 人間의 權利와 自由

제1조 러시아연방 - 러시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인간의 불가분의 권리와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민주적 · 합법적 · 비종교적인 연방국 가이다. 러시아연방에서 국가권력의 유일한 원천은 그 다민족적 국민이다.

제2조 러시아는 헌법과 연방조약에 입각하여, 연방의 구성주체를 그 불가분의 일부로 하여 결합된 연방국가 - 러시아연방이다.

제3조 러시아연방은 민주공화국이다.

러시아연방의 국가기구는 인민주권에 입각하고 있다. 러시아의 인민은 자신의 권력을 직접 또는 자신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사한다.

제4조 러시아연방의 국가권력은 행정권과 사법권의 분립, 러시아연방과 공화국·지방·주·연방직할시·자치주·자치관구간의 관할대상과 권한의 엄격한 분배에 기초한다.

제5조 러시아연방의 영역에서는 국가권력의 통일이 보장된다. 그것은 다음에 의하여 대표되고 행사된다.

국가원수 - 러시아연방대통령,

입법권 - 국가의회(고스다르스토베니/두마)와 연방평의회(소비에트/페데라찌이)으로 구성된 연방의회(헤데라리네/소브라니에),

행정권 - 러시아연방정부,

사법권 - 러시아연방의 사법기구상의 법원과 법관.

공화국·지방·주·연방직할시·자치주·자치관구에 있어서 국가권력은 연방조약에 입각하고 있으며 공화국·지방·주·연방직할시·자치주·자치관구에 의하여 설립된 입법(대의제) 및 집행기관이 행사한다.

러시아연방대통령, 연방의회 및 러시아연방과 연방구성체의 선거제 국가기관은 러시아연방시민에 의하여 선출된다.

지방자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기능한다.

제6조 러시아연방에서는 어떠한 이념과 종교도 국가적·강제적인 것으로 확립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모든 정당과 교회는 국가의 보호 또는 감독아래 놓이지 아니한다.

제7조 러시아연방인민의 직접권력의 최고표현은 권력기관에 자기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자유·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실시되는, 전국민투표이다.

전국민투표의 기준과 실시절차는 연방의 헌법적 법률로 정한다.

제8조 러시아연방에서는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법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에 의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인정되고 보장된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는 태어날 때부터 러시아의 모든 인민에 속한다.

제9조 전체의 인민은 법과 법원앞에 평등하다. 권리와 자유의 평등은 인종, 민족, 언어, 출신, 재산상 및 직무상의 지위, 거주지, 종교에 대한 태도, 신념, 사회단체에의 소속 및 기타의 사정에 관계없이 국가에 의하여 보장된다.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

소수민족에 속한 사람의 권리와 자유는 이 헌법, 국제법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 및 러시아 연방의 국가간 조약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0조 인간의 권리와 자유는 러시아에서 직접 효력을 가진다. 인간의 권리와 자유는 그 자체로서 의미, 내용, 법의 적용에 대하여 결정하고 입법권력, 집행권력, 지방자치를 구속하고, 재판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1조 러시아에서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어떠한 자유도 인간존엄을 축소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제12조 누구든지 생활, 개인의 불가침,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고문, 폭력, 기타의 잔혹하고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대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누구도 그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료, 학술 또는 기타 실험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3조 누구든지 생활의 자유, 개인과 가족의 비밀, 자기의 명예와 명성의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누구든지 양심의 자유, 정신적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 또는 무신론의 활동, 사상의 자유, 자기의 의견과 신념의 표현, 자기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누구도 자기의 의견과 신념의 표현, 또는 그의 포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기의 의견과 이념을 자유로이 표현하는 권리, 정보를 찾고 입수하고 자유로이 표현하며 보급하는 권리를 가진다. 출판의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은 금지된다.

제16조 누구든지 러시아연방의 전영역에 있어서 이동의 자유의 권리, 거주지와 주거의 선택권을 가진다.

누구든지 러시아연방의 국외에 자유로이 출국할 수 있다. 러시아연방의 시민은 조국에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누구든지 서신의 자유와 비밀, 우편, 정보, 전화 및 기타의 통신 수단의 비밀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단결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

누구도 어떠한 단체에의 가입 또는 그 단체에의 등록이 강제되지 아니한다.

제19조 러시아연방의 시민은 평화적이며 무기를 지니지 아니하고 집합, 회합, 집회, 시위행동, 행진 및 피켓(picket)을 행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주거는 불가침이다. 누구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제21조 누구든지 재산을 소유하고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점유·이용·처분하는 권리를 가진다.

소유물은 불가침이다.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사적 소유권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이다.

시민과 단체는 사유재산으로서 토지 및 법률에 따라 취득한 기타의 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자기의 재산을 매각·증여·유증·기타의 형태로 처분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누구든지 경제적 자유에 대한 권리,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고 임의의 경제활동을 위해 자기의 능력과 재산을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노동은 자유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노동능력을 사용하여 일과 직업의 종류를 자유로이 선택하는 권리를 가진다.
강제노동은 금지된다.

제24조 헌법에 열거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는 기타 인간의 사회적 권리와 자유를 부정 또는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 또는 축소하는 법률이 공포되어서는 아니된다.

권리와 자유를 실현하는 조건과 절차는 법률에 의하여서만 정해진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개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법률에 의하여 준수되는 타인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국가체제의 보호, 안전과 사회질서의 보호, 건강과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방의 헌법적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어떠한 것도 헌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이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25조 비상사태하에서 개별의 권리와 자유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법령에 그러한 제한과 효력의 범위와 기한을 명시하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러시아연방의 전 영역 및 개별지역에서 비상사태는 연방의 헌법적 법률에 정한 상황과 절차에 의하여 선포할 수 있다.

제26조 누구도 그 죄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서 입증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및 자유박탈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서만 용인된다.
개인은 법원의 심리가 있을 때까지 36시간 이상 억류되지 아니한다.
사형은 그것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고의살인, 중대한 범죄에 수반된 살인에 대한 예외적인 형벌상의 조치로서, 배심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적용된다.

제27조 토지 및 기타 천연자원의 점유 · 이용 · 처분은 그것이 천연자원을 고갈시키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유자에 의하여 자유로이 행하여진다.

독점 및 비양심적 경쟁을 위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8조 자신의 국가에서 자유를 위해 활동하는 것을 이유로 박해받거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외국인은 러시아연방에서 비호의 권리를 가진다.

러시아연방에 있어서는 정치활동 및 러시아연방의 법률이 범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활동을 이유로 박해받는 자를 다른 국가에 인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범죄로 인하여 소추된 자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연방법 또는 국제조약에 의한다.

제29조 러시아연방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대하여 국가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누구든지 법률에 정한 모든 수단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국가기관, 시설 및 간부직원은 법률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누구에게든지 그 권리와 자유에 직접 관련된 문서와 자료를 열람하는 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31조 누구든지 법원에 의하여 그 권리와 자유를 보호받는다. 법률위반, 월권행위, 시민의 권리의 침해를 초래한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공직자의 결정과 활동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 범죄 및 권력남용의 희생자의 권리와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국가는 그 희생자에 대하여 재판의 이용과 받은 손실에 대하여 유책자 및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것을 보장한다.

제33조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상급의 법원에 판결의 재심을 구하는 권리 및 특별사면 또는 형벌의 경감을 구할 권리

를 가진다.

누구도 동일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중의 형사책임 또는 기타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한다.

재판의 진행에 있어서 법률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4조 개인의 책임을 확정하거나 그것을 엄격히 하는 법률은 소급적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누구도 행위시에 위법이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법행위의 실행후에 그에 대한 책임이 폐지 또는 경감되는 경우, 새로운 법률이 적용된다.

시민에 대한 형벌 또는 시민의 권리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정식 절차에 따라 공포된 후에만 발효된다.

제35조 누구도 자신, 배우자, 법률로 그 범위를 정한 근친에 불이익이 되는 증언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증언을 행하는 의무가 면제 되는 기타의 경우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 누구든지 수준높은 법률구조를 받을 것이 보장된다.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법률구조를 행한다.

범죄행위를 이유로 체포, 구속되고 기소된 자들은 모두 구속, 체포 또는 고소의 순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누구든지 국가기관 및 그 간부직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범한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가 가진다.

第 2 章 러시아聯邦市民

제38조 사람의 러시아연방에의 소속 및 그 지위는 러시아의 국적에 의하여 확정된다.

러시아에서 출생하고 계속 생활하는 사람은 모두 러시아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연방구성주체의 모든 시민은 러시아연방의 시민이다.

러시아연방의 모든 시민은 각 연방구성체의 영토에서 그 연방구성체의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며,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러시아국적의 취득, 그 자발적 포기에 관하여는 연방법으로 정한다.

제39조 러시아연방의 시민은 자신의 국적 및 그것을 변경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러시아연방의 시민은 러시아로부터의 퇴거를 강제받지 아니한다.

러시아연방은 그 시민에 대하여 국외에서의 보호와 비호를 보장한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은 공통의 성격을 갖으며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또한 헌법과 법률이 시민의 사회적 보호를 목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누구에 대하여도 특전과 특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개인적 부담금, 세금, 수수료도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40조 러시아연방의 시민은 연방법 및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국적-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다.

러시아연방의 시민이 외국국적을 갖는 것은 연방법 또는 국제조약이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의 권리와 자유는 축소되지 아니하며 러시아국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면제받지 아니한다.

제41조 러시아연방의 시민은 18세에 성인이 되며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독자적으로 완전히 행사할 수 있다. 그 예외는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42조 러시아연방의 시민은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기관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18세이상의 러시아연방시민은 선거에 참가한다. 법원이 무능력자로 선고한 시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유제한시설에 수용된 시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3조 가족, 모성, 아동은 사회의 배려와 법률에 의하여 우선적 보호의 대상이 되며 아동에 대한 보호, 그 양육은 부모의 당연한 권리와의 무이다.

아동을 양육하는 노동은 그 외의 모든 노동과 동등하며 일반적 및 정당한 사회보장을 위한 기초이다.

제44조 러시아연방에서는 노령 및 질병, 노동력 상실, 부양자 부재의 경우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을 받는다.

연금, 사회부조, 사회적 원조는 사회의 경제력에 따라 법률에 정한 최저생활비를 하회하지 아니하는 생활수준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동이 많은 가족, 전쟁 및 비전시의 장애자, 억압의 희생자, 전쟁의 희생 및 억압에 의한 미망인과 고아, 불치의 육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 고아 및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은 우선적인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임의의 사회보험, 보완적 형태의 사회보장의 확립, 자선사업은 장려된다.

제45조 러시아연방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기관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시민에 인도함으로써 또는 재산이 적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자치체가 보유하는 주거를 적절한 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또는 법률에 정해진 기타의 형태에 의하여, 각 가족에 대하여 설비가 갖추어진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제46조 시민은 안전과 위생의 요구에 부합되는 조건하에서 노동할 권리, 동등의 노동에 대하여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률에 정한 최저임금의 범위를 밀돌지 않는 동등의 보수를 받을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7조 시민은 보건제도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유·무상의 의료서비스, 의료보험을 포함하는 의료서비스의 모든 공여형태의 발전은 보장된다. 환경적으로 풍요한 생활, 건강의 강

화, 체육 및 스포츠의 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은 장려된다.

제48조 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의 활동은, 경제적 인 자유와 활성화, 기업의욕, 시민이 자기와 그 가족을 위해 경제적으로 풍요한 생활을 독자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가능성에 대한 국가보호로 대체될 수 없다.

제49조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창작의 자유, 교육의 자유 및 지적 소유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

시민은 문화생활에 참가하고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재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호에 유의하여 역사, 문화, 자연의 기념비를 소중히 여길 의무를 부담한다.

제50조 법률이 정한 세금의 납부는 방위, 사회적 필요 및 기타 국가적 필요에 대한 국가의 지출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과 그 단체의 의무이며 책무이다.

제51조 교육을 위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은 공공의 의무이며 국가의 책무이다. 교육의 조건과 절차, 국립, 공립, 사립학교, 기타의 교육시설의 활동은 법률로 정한다. 중등교육, 직업교육은 국가의 보조금을 받으며 모든 시민이 무상으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52조 조국의 방위는 시민의 의무이다.

시민은 연방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그 신념과 신앙이 병역의무이행에 반하는 시민, 또는 법률이 달리 정한 경우에 시민은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시민적 의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53조 시민은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천연자원을 소중히 여길 의무를 부담한다.

제54조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러시아연방에 있어서 연방법과 상호주의

의 원칙에 입각하여 체결된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진다.

第3章 러시아聯邦

제55조 러시아연방은 연방국가로서 공화국·지방·주·연방직할시·자치주·자치관구로 구성된다.

연방의 구성주체는 자치적인 지방공공단체에 구성되며, 독자적인 자기의 지역적 기구를 결정한다.

제56조 러시아연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아디게아공화국(아디게아), 바시고르트스탄공화국, 부랴티아공화국, 고르니·알타이공화국, 다게스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잉구시공화국, 카바르다·바르칼공화국, 카미키아·하리무그·탕구치공화국, 카라챠이·체르케스공화국, 카레리아공화국, 고마공화국, 마리·엘공화국, 몰도바·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사하(야쿠티아)공화국, 北오세티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타타르스탄공화국(타타르스탄), 투바공화국, 우드무르트공화국, 하카시아공화국, 체첸공화국, 츄바시공화국.

地方 — 알타이, 쿠라스노달, 쿠라스노알스쿠, 연해, 스타부로포리, 하바로프스크.

州 — 아무르, 아르한게리스크, 아스트라한, 베르고로드, 프란스크, 부리지미르, 보르고그라드, 보로구다, 보로네지, 이바노보, 이르쿠츠쿠, 카리닌그라드, 카루가, 캄쳅카, 케메르보, 키로프, 코스트라마, 쿠르간, 쿠르쯔쿠, 레닌그라드, 리페쯔쿠, 마가단, 모스크바, 무르만스크, 니지니노부그로드, 노바고로드, 노보시비尔斯크, 옴스크, 오렌부르그, 오류르, 벤쟈, 벨미, 프스코흐, 로스트호, 랴젠, 사마라, 사라토흐, 사할린, 스베르드로흐스크, 스모렌스크, 담보흐, 트베리, 담스크, 투라, 츄메니, 울리야노프스크, 테라빈스크, 티타, 야로스라보리.

聯邦直轄市 — 모스크바, 상트페테스부르그.

自治州 — 유다야.

自治管區 — 아가 · 부랴트, 코미 · 베르미, 코랴크, 네네츠, 타이미르(돌간 · 네네츠), 우스티엘딘 · 브랴트, 한티 · 만시, 츄쿠티, 에베키, 야마로 · 네네츠.

러시아연방에의 가입 및 새로운 연방구성주체의 형성은 연방조약에 조인하는 연방구성주체의 합의에 따라 연방의 헌법적 법률의 채택에 의하여 실시된다.

제57조 러시아연방의 영토에는 공화국 · 지방 · 주 · 연방직할시 · 자치주 · 자치관구의 영토, 러시아연방의 내수면과 영해, 그 상공이 포함된다.

공화국, 지방, 주, 자치주 및 자치관구간의 경계는 연방조약의 정해진 절차에서 승인되고, 그들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방구성주체의 의안제출(이니셔티브)에 의하여 연방구성주체의 경계문제는 연방평의회에 의하여 관계되는 지역주민의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제58조 러시아연방의 주권은 그 전영토에 미친다.

어떠한 연방의 구성주체도 인민의 어떠한 부분에 관하여, 또는 개개의 국가기관, 공직자 또는 개인도 러시아연방의 주권의 실현에 관하여 권리를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없다.

제59조 러시아어는 러시아연방에서 공식적인 국가언어로 인정된다.

공화국에 있어서는 국가언어로서 공화국의 민족어를 사용할 수 있다.

국가와 러시아연방의 모든 민족에 민족어를 보존하고, 그 학습과 발전을 위한 조건을 조성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60조 러시아연방은 러시아연방-러시아로 명명된다.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의 명칭은 동일한 의의를 가진다.

러시아연방은 러시아연방의 국가, 연방의 헌법적 법률에 의하여 정한 문양의 國章과 國歌를 가진다.

러시아연방의 수도는 모스크바市이다.

제61조 러시아연방과 연방구성주체 사이의 국가적 권한은 헌법과 연방 조약에 정한 러시아연방의 권한의 범위외에 연방구성주체가 자기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국가권력을 행사한다는 입장에 입각하여 배분된다.

제62조 러시아연방의 관할에는 연방조약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a) 러시아연방과 연방법의 채택 및 개정, 그 준수에 대한 감독
- b) 러시아연방의 연방체제와 영토
- c) 인간 및 시민의 권리와 자유, 러시아연방의 국적, 소수민족의 권리의 보호
- d) 입법 · 집행 · 사법권력의 연방기관체계의 확립, 그 기관의 조직 및 활동의 절차, 연방국가기관의 형성
- e) 연방고유재산 및 연방고유재산의 관리
- f) 연방정책의 원칙확립 및 러시아연방의 국가 · 경제 · 환경 · 사회 · 문화 · 민족적 발전의 분야에의 연방프로그램
- g) 통일시장의 법적 원칙의 확립, 금융 · 외화 · 신용 · 관세의 조정, 통화의 발행, 가격정책의 원칙, 연방은행을 포함한 연방의 경제기관
- h) 연방예산, 연방세 및 수수료, 지역개발연방기금
- i) 연방에너지체계, 원자력발전, 핵분열물질, 연방수송, 도로방, 정보 · 통신, 우주에의 활동
- j)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 및 국제관계,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 전쟁과 평화의 문제
- k) 러시아연방의 대외경제관계
- l) 국방 및 안전보장; 방위산업, 무기탄약, 군사장비 및 기타 군사재의 매매절차의 결정, 핵분열물질, 독물, 마약류의 생산 및 그 사용절차
- m) 러시아연방의 국경선, 영해,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지위 및 방위
- n) 재판제도, 검찰제도, 형사 · 형사소송 · 형법집행법, 사면 및 특사, 민사 · 민사소송 · 중재소송법, 지적소유권의 법적 규제

o) 연방저촉법

p) 기상업무, 규격, 度量衡原器, 미터(meter)법, 시간의 계산, 공식 통계 및 부기

q) 러시아연방의 국가포상 및 명예칭호

r) 연방국가업무

연방조약에 의하여 러시아연방 및 연방구성주체의 공동관할에 포함되는 국가적 권한, 그 권한의 국가기관에 의한 실시절차가 결정된다.

제63조 생산물, 상품, 서비스 및 금융자산은 러시아연방의 전영토에 자유롭게, 누구에게도 제한을 가함이 없이, 러시아연방에 존재하는 연방구성주체와 지역간의 경계에 관계없이 유통된다.

연방구성주체와 지역의 경계를 통과하는 생산물, 상품, 서비스 및 금융자산의 이동에 대하여 어떠한 관세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생산물, 상품, 서비스, 금융자산의 유통에 대한 개별적 또는 일시적인 제한은 그것이 사람의 생활 및 건강의 안전과 보호, 자연과 문화재의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에 의하여 도입된다.

제64조 러시아연방의 전영토에 있어서 통일통화단위는 루블이다. 러시아에서는 기타의 통화의 제정과 발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연방예산, 연방구성주체의 예산, 지방예산으로 정수되는 조세의 체계는 연방법으로 정한다.

납세자가 그의 직업 또는 소유하는 통상의 수입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부담이 되는 조세의 부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채는 법률에 근거하여 발행되고 주민 및 기타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인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65조 러시아연방헌법은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헌법의 조항은 러시아연방에서 직접 효력을 가진다.

연방의 헌법적 법률은 헌법에 정한 문제와 관련하여 채택된다.

러시아연방에서는 법률 기타의 법령에 입각하여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원리로서 효력을 갖는 법전, 입법의 원칙 기타의 법전화된 법률이 채택된다.

연방법은 러시아연방의 전영토에서 효력을 가진다. 연방법과 러시아연방에서 공포된 기타의 법령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법이 효력을 가진다.

제66조 연방구성주체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체계는 이 헌법의 인민주권, 공화국통치형태, 권력분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공화국·지방·주·자치주·자치관구·연방직할시에서는 국가권력의 대의제기관, 집행권력의 장이 선출되고, 정부(행정부)가 구성된다.

연방구성주체의 집행권력의 장 및 정부(행정부)는 러시아연방의 집행권력의 통일체계를 구성한다.

제67조 지방에 있어서 연방국가기관의 권한은 연방지역기관 및 공직자가 수행한다.

러시아연방의 국가기관은 연방구성주체의 국가기관과 공직자 및 지방자치기관에 연방국가기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구성주체의 국가기관, 공직자, 지방자치기관은 연방법 및 당해의 러시아연방의 국가기관의 결정을 지침으로 한다.

러시아연방대통령 및 러시아연방정부는 이 헌법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전영토에 연방국가기관의 권한의 수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제68조 러시아연방에 대한 침략을 격퇴하는 경우 및 국제법의 규범이 규정하는 기타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에 대한 전쟁수행의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69조 러시아연방은 관련 조약 및 협정에 따라 자기의 주권의 일부를 국가의 공동체, 집단, 동맹 기타의 결합체에 양도할 수 있다. 이러한 조약 및 협정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 러시아연방의 국가체제의 원칙에 저촉될 수 없다. 이는 평등과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성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약 및 협정의 비준은 대의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채택된 연방평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행해진다.

第 4 章 러시아聯邦大統領

제70조 러시아연방대통령은 국가원수이다.

대통령은 헌법,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증인이다. 이 헌법에 정한 절차에서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주권, 그 독립 및 국가의 통일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강구하고, 모든 국가기관의 통일된 기능과 상호활동을 보장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내 및 국제기관에서 러시아연방을 대표하는 국가의 최고 공직자이다.

제71조 러시아연방대통령은 임기 5년으로 선출된다.

동일인은 계속해서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취임할 수 없다.

러시아연방에 10년 이상 주소를 갖는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러시아연방의 모든 시민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

대통령은 연방의회 양원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은 그 직무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의 선출절차는 연방법으로 정한다.

제72조 러시아연방대통령은 취임시에 연방의회의 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행한다. <나는 성실히 대통령의 책무를 수행하고, 러시아연방헌법을 집행·보호하며, 러시아연방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제73조 러시아연방대통령은 고위공직자를 직접 임명하되, 연방의회에 그러한 직위에 선출, 임명되는 후보자를 제의한다.

러시아연방대통령은,

임명을 위해, 러시아연방정부의 의장의 후보자를 연방의회에 제의한다.

러시아연방정부의 신임문제 또는 그 사직문제를 연방의회에 제의한다.

임명을 위해, 러시아연방중앙은행총재의 후보자를 연방의회에 제의한다.

러시아연방정부의 의장의 제의에 의하여 연방평의회와의 협의후에, 연방의 각료 및 연방관청의장을 임명하고 그 직무로부터 해임한다.

임명을 위해,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최고법원, 연방최고중재법원의 법관 및 연방의 최고사법존재에의 연방법관의 후보자, 러시아연방검찰총장 후보자를 연방평의회에 제의한다.

러시아연방대통령정부의 지도자 및 대통령부의 다른 공직자를 임면한다.

지역에 있어서 러시아연방대통령의 전권대리인을 임면한다.

러시아연방군최고간부를 임면한다.

외국 및 국제기관에 있어서 러시아연방전권대표를 임명하고 소환한다.

제74조 러시아연방대통령은,

연방의회의 선거를 결정한다.

연방의회가 이 헌법 제106조에 규정한 러시아연방정부의 조직을 위하여 필요한 결정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기타의 국가권력의 위기가 이 헌법에 규정하는 절차에 근거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연방평의회 및 연방의회의 의장과의 협의후 연방의회의 임기만료전 해산을 행한다.

전국민투표를 결정한다.

자신의 주도하에 연방의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연방의회에 대하여 러시아의内外정책의 실현에 관한 연차교서를 송부한다.

연방법이 채택된 후 서명하고 공포한다.

제75조 러시아연방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에 관하여 교섭과

서명을 하고 국제관계에서 국가를 대표한다.

외국의 대사와 임시사절 및 국제기구의 전권대표에 대하여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신임장을 수여한다.

제76조 러시아연방대통령은 러시아연방군 최고총사령관이다.

러시아연방이 침략 또는 직접의 위협을 받은 경우, 대통령은 국가의 영토 또는 개개의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것을 지체없이 연방의회에 보고한다.

제77조 러시아연방대통령은 이 헌법, 연방조약 및 연방의 헌법적 법률에 정한 사태와 절차에 있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것을 지체없이 연방의회에 보고한다.

제78조 러시아연방대통령은 러시아연방 안전보장평의회를 주재한다.

동 평의회는 러시아연방정부의 의장, 국방, 내무 및 법무를 담당하는 연방각료,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기타의 공직자를 구성원으로 한다.

러시아연방 안전보장평의회는 러시아연방대통령 및 러시아연방정부가 채택하는 결정을 검토하고 준비한다.

제79조 러시아연방대통령은,

러시아국적 및 비호부여의 문제를 결정한다.

국가포상을 수여하고, 러시아연방의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특별사면을 행한다.

제80조 러시아연방대통령은 러시아연방과 연방구성주체의 국가기관간의 분쟁 또는 연방구성주체의 국가기관간의 분쟁의 중재자로서 계쟁문제에 관하여 이루어진 합의를 자기의 결정에 의하여 승인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쟁을 연방헌법재판소의 심의에 회부한다.

러시아연방, 연방구성주체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체가 자신의 헌법 및 연방헌법에 반하여 또는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반하여 법령을 채택

한 경우, 러시아연방대통령은 그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위헌법률의 무효를 청구한다.

제81조 러시아연방대통령은 대통령령을 채택하고 명령을 공포한다.

제82조 러시아연방대통령은 불가침이다.

제83조 러시아연방대통령의 권한은 사임, 권한의 수행불가능, 파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정지된다. 새로운 대통령선거는 위와같은 상황이 발생한 때로부터 6주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러시아연방대통령은, 국가의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반역행위를 행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고의적으로 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가의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그것이 연방의 최고사법존재에 의하여 인정된 경우에만 파면된다.

러시아연방대통령이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모든 경우에는 연방평의회의장이,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러시아연방정부의 의장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第 5 章 聯邦議會

제84조 연방의회는 러시아연방의 의회이며, 러시아연방의 최고대의체 연방기관이다.

제85조 연방의회는 연방평의회와 국가의회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연방평의회에는 연방의 각구성주체로부터 2인씩의 대의원이 선출된다. 다만, 러시아연방구성공화국·자치주·자치관구의 대의원은 이를 연방평의회 대의원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연방법이 정한 대의원선출기준에 따라 2인이상 선출된다.

국가의회는 단일의 대의원선출기준에 입각하여 지역선거구별로 선출된 300인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제86조 연방평의회 및 국가의회는 동시에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국가의회 및 연방평의회의 대의원의 선출절차는 연방법으로 정한다.

제87조 국가의회의 대의원 및 연방평의회의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자는 21세에 달한 선거권을 갖는 러시아연방시민으로 한다.

대의원은 연방평의회와 국가의회에 동시에 소속될 수 없다.

제88조 국가의회의 대의원 및 연방평의회의 대의원은 자신의 대의원직무의 수행에 관한 행동에 대하여 구류체포되지 아니하고 수색, 신체수색, 심문, 재판의 절차에 의하여 과해지는 행정벌을 받지 아니하며 자신의 대의원직무의 수행에 관한 행동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한다.

대의원은 범죄현장에서 체포된 경우외에는 당해 원의 동의없이, 또는 폐회기간중에는 원의 의장의 동의없이, 자기의 직무의 수행에 관계되지 아니한 형사범죄 또는 행정적 위법행위에 의하여 소추 또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89조 연방의회는 회기의 형태로 그 활동을 수행한다.

연방의회의 제1회기는 의회선거후 30일 이내에 러시아연방대통령에 의하여 소집된다.

연방의회의 폐회는 양원합동의 결정에 따라 선언된다.

제90조 연방평의회와 국가의회는 개별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양원합동회의는 이 헌법이 규정하는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양원의 회의는 공개된다. 양원은 규칙에 직접 규정된 사례에 관하여 비공개회의를 행할 권리를 가진다. 각원은 원의 구성에서부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당해 원의 회의를 지도하고 그 내규를 관리한다.

양원의 임무수행 및 합동회의개최에 관한 절차는 각원 및 합동회의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 연방평의회와 국가의회는 연방의회가 채택하는 법률 기타 법령

의 초안을 준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위원회를 설치하고 의회공청회를 개최하고 조사를 행한다.

제92조 연방평의회와 국가의회는 합동으로,

연방예산을 채택하고 그 집행에 관한 보고를 승인한다.

러시아연방대통령의 연차교서를 심의한다.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새로운 연방구성주체의 러시아연방에의 편입을 승인한다.

연방의 헌법적 법률을 채택한다.

헌법의 수정을 제안한다.

헌법에 정한 기타의 문제를 결정한다.

연방평의회와 국가의회의 합동결정은 이 헌법 또는 연방의 헌법적 법률에 의하여 다른 채택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각원의 대의원의 과반수가 그에 찬성한 경우 채택된 것으로 본다.

제93조 연방평의회는 헌법 및 연방조약에 따라,

연방구성주체간의 경계선 변경을 승인한다.

연방구성주체의 헌법적 · 법적 지위의 변경을 승인한다.

제94조 연방평의회는 러시아연방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연방정부의 의장을 임명하고 정부의 신임 또는 그의 총사직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95조 연방평의회는 러시아연방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최고법원, 연방최고중재법원의 법관, 연방의 최고사법존재를 구성하는 연방법관을 임명하고, 러시아연방검찰총장을 임면한다.

연방평의회는 러시아연방안전보장평의회의 후보자에 관한 러시아연방대통령의 제안을 심의한다.

제96조 연방평의회는 국제조약을 비준 또는 파기한다.

전쟁 및 평화의 문제를 결정한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또는 그 선포에 관한 러시아연방대통령의 법령을

승인한다.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러시아연방대통령에 의한 계엄령 선포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러시아연방군을 러시아연방의 영토외에 사용할 가능성의 문제를 결정한다.

국가회의가 채택한 연방법을 심의한다.

제97조 연방평의회는 이 헌법 제83조에 규정되어진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러시아연방대통령의 파면문제를 결정한다. 대통령의 파면에 관한 결정은 그에 대한 연방평의회의 대의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채택된 것으로 본다.

제98조 연방평의회의 결정은 이 헌법 또는 연방의 헌법적 법률이 다른 결정채택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의원총수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다.

제99조 국가의회는,

러시아연방의 관할내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법령에 의하여 규제를 한다.

연방세 및 수수료를 제정한다.

통화발행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국가포상을 제정하고, 러시아연방의 명예칭호의 제정 및 수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사면을 선언한다.

이 헌법에 따라 러시아연방대통령을 탄핵소추한다.

국가의회의 결정은 이 헌법 또는 연방의 헌법적 법률이 다른 결정채택 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의원총수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다.

제100조 연방의회는 연방법을 채택한다.

연방의 헌법적 법률은 연방의회 각원의 대의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채택된다.

국가의회와 연방평의회는 그 활동의 조직과 절차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결정을 채택한다.

제101조 입법발의권은 국가의회와 연방평의회, 연방의회 양원의 대의원, 러시아연방대통령, 러시아연방정부, 연방구성주체의 입법(대의제)기관에 속한다.

연방예산안, 세금의 도입, 폐지, 그 지불의 면제에 관한 법안, 국채발행에 관한 법안, 국가의 재정적 채무의 변경에 관한 법안, 연방예산으로부터 지불되는 지출에 관하여 규정하는 기타의 법안(財政法案)은 러시아연방대통령 또는 러시아연방정부의 제안에 의해서만 연방의회에 상정된다.

제102조 국가의회는 연방평의회 또는 연방의회 양원이 이 헌법에 따라 채택한 연방법을 제외하고 러시아연방의 관할에 속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연방법을 채택한다.

국가의회가 채택한 법률안은 연방평의회에 송부된다. 법률안을 송부받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연방평의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은 연방의회에 의하여 채택되어진 것으로 본다.

연방평의회가 관련된 결의의 채택을 통해 법률안을 각하한 경우, 양원은 상충하는 견해의 해결을 위해 5일 이내에 협의위원회를 설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의회가 다시 그 법안을 심의한다. 재투표시에 법안이 국가의회의 대의원총수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채택된 것으로 본다.

제103조 채택된 연방법은 서명 및 공포를 위해 5일 이내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법률안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연방의회는 그 법률안 또는 그 일부를 재심의한다. 법률안이 각원 대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로 재의결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명·공포된다.

제104조 연방의회가 임기만료전에 해산된 경우 러시아연방대통령은 새로 선출되는 연방의회가 연방의회의 해산 후 90일이내에 소집되도록 선거일을 지정한다.

第 6 章 러시아聯邦政府

제105조 러시아연방의 행정권은 러시아연방정부가 행사한다.
정부는 러시아연방정부의 의장 및 연방각료로 구성된다.

제106조 러시아연방정부의 의장은 러시아연방대통령이 그 후보자를 연방평의회에 제의한 후 동 평의회에 의하여 2주 이내에 임명된다.
연방평의회가 대통령이 제의한 후보자를 거부한 경우, 대통령은 1주일 이내에 정부의장의 임명문제를 연방평의회의 새로운 심의에 부친다. 연방평의회가 대통령이 제의한 후보자를 다시 거부한 경우에는 정부의장의 임명문제는 1주일이내에 대통령에 의하여 연방의회 양원의 합동심의에 부친다. 이러한 경우, 정부의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제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연방의회가 이 기간내에 정부의장제의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은 연방의회의 임기만료전의 해산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정부의장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제107조 러시아연방정부 의장은 임명후 1주이내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대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연방집행권력기관의 기구에 관하여 제청한다.

연방각료는 러시아연방대통령에 의하여 임면된다. 러시아연방대통령은 연방각료의 사임을 수리한다.

정부의장은 1인 또는 수인의 연방각료를 부의장으로 임명한다.

러시아연방정부의 조직과 활동은 연방의 헌법적 법률로 정한다.

제108조 러시아연방정부 의장은 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정부의 정책 및 활동의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연방각료는 국가운영의 당해 분야에 있어서의 정부의 정책의 실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9조 러시아연방정부는 연방집행권력의 다른 일반적 직무와 동시에 연방예산을 책정하고 이를 연방의회에 제출하여 그 집행을 보장한다. 러시아연방의 영토에서 단일의 재정, 신용 및 통화정책의 실시를 보장한다.

러시아연방의 영토에서 문화, 과학, 교육 및 보건분야의 국가정책실시를 보장한다.

연방자산을 관리한다.

국가의 방위, 국가안전보장,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적법성,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 재산과 사회질서의 보호, 범죄대책에 대하여 연방구성주체와 협의한 조치를 실시한다.

제110조 러시아연방정부는 이 헌법, 연방법, 러시아연방대통령령에 기초하여 이들을 집행하기 위하여 결정 및 명령을 공포하고 이의 집행을 보장한다.

정부의장 및 그 지시에 의하여 부의장은 명령을 공포하고 연방각료는 명령을 공포한다.

러시아연방정부의 결정과 명령, 정부의장과 그 부의장의 명령, 연방각료의 명령은 그것들의 권한 범위내에서 채택되어 러시아연방의 전 영토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제111조 러시아연방정부는 총사퇴할 수 있다. 총사퇴는 러시아연방대통령의 제의에 의하여 연방평의회에 의하여 수리되거나 또는 기각된다.

연방평의회는 대통령의 제의에 의하여 또는 양원 대의원의 제안에 의하여 러시아연방정부에 대하여 불신임할 수 있다. 정부불신임에 관한 결의는 연방평의회의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채택된다.

대통령의 정부불신임 또는 그 총사퇴의 수리에 관한 제의가 지지받지 못하거나 그 제출후 1주일이내에 연방평의회에 의하여 심의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다시 자기의 정부불신임 또는 그 총사퇴의 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연방평의회에 의한 문제의 심의 없이도 정부는 총사퇴한다.

연방평의회는 연방각료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할 수 있다. 연방평의회의 당해 결정은 대통령에 송부되고 대통령은 정부의장의 제의에 따라 연방각료를 유임시키거나 해임한다.

제112조 러시아연방정부가 총사퇴한 경우 또는 연방평의회가 정부불신임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 경우, 러시아연방대통령은 1주일이내에 연방평의회에 대하여 정부의장의 후보자에 대하여 제의한다.

러시아연방정부의장은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연방각료는 정부의장의 요청에 따라 그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第 7 章 裁 判

제113조 러시아연방의 재판은 법원에 의하여서만 실시된다.

러시아연방의 법원구성법은 헌법과 연방의 헌법적 법률에 의하여 제정된다.

제114조 고등사법교육을 받고 사법직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25세이상의 시민은 법관이 될 수 있다. 러시아연방의 법원의 재판관의 기타 요건은 연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5조 법관은 파면되지 아니한다.

법관의 권한은 연방법에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서만 정지 또는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

제116조 법관은 불가침이다.

법관은 연방법에 정한 사법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행정·징계책임을 묻는다.

제117조 법관은 독립이며, 헌법과 법률에만 따른다.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국가 또는 기타의 기관의 법령과 법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법률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제118조 누구든지 당해 사건이 그 재판관할에 속하는 법원 또는 법관에 의하여 사건의 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범죄를 범한 피의자는 연방법에 정한 경우에 그 사건에 배심원의 참가하에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9조 모든 법원에서의 심리는 공개된다. 비공개법정에서의 사건의 심리는 연방법에 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형사사건의 궐석재판은 제1심의 법원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송절차는 연방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주의의 원칙에 따라 행하여진다.

제120조 법원과 법관의 유지비는 완전하고 독립적인 재판의 실시를 보장하고 법률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며 그 예산의 승인과 집행시에 감액되지 아니한다.

제121조 연방헌법재판소는 법률과 연방의회의 결정, 러시아연방대통령령, 기타 연방기관의 법령, 공화국헌법과 지방·주의 법규, 기타 연방구성주체의 법령, 연방내부문제 및 국제조약과 헌법의 합치에 관한 문제를 심의한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국가기관간, 연방국가기관과 연방구성주체의 국가기관간, 연방구성주체의 국가기관간의 권한에 관한 분쟁을 해결한다.

제122조 연방헌법재판소는 민사·형사·행정 기타 사건에 관한 최고사법기관이며 전반적 사항을 관掌하는 그 소관하의 법원의 활동에 대하여 재판감독을 행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법적 결정을 채택한다.

제123조 연방최고중재법원은 경제분쟁 및 중재법원에 의하여 심의되는 기타의 사건에 해결에 관한 최고사법기관이며 중재법원의 활동에 대한 재판감독을 행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법적 결정

을 채택한다.

제124조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최고법원, 연방최고중재법원, 연방의 최고사법존재의 연방법관은 러시아연방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연방평의회에 의하여 임명된다.

기타 법원의 연방법관은 러시아연방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다.

헌법재판소, 연방최고법원, 연방최고중재법원의 권한, 편성 및 활동의 절차는 연방의 법률로 정한다.

제125조 연방의 최고사법존재는 연방헌법재판소소장, 연방최고법원원장, 연방최고중재법원원장, 상기 각 재판소의 제1부소장 및 러시아연방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연방평의회에 의하여 연방의 최고사법존재에 임명된 3인의 연방법관으로 구성된다.

최고사법존재의 회의에서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최고법원, 연방최고중재법원의 장이 윤번제로 의장을 담당한다.

최고사법존재는,

러시아연방헌법을 해석한다.

러시아연방대통령을 파면하는 사유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린다.

연방법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연방평의회가 임명한 연방법관을 해임한다.

러시아연방의 법원의 관할사건의 정의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결정을 채택한다.

러시아연방대통령에 대하여 러시아연방검찰총장의 후보자 및 그 직무해임에 대하여 제안한다.

판결의 합헌성에 관한 문제, 연방의회, 러시아연방대통령,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최고법원, 최고중재법원의 제의에 따라 기타의 문제를 심의한다.

제126조 러시아연방검찰총장을 총수로 하는 러시아연방검찰청은 범죄 사건의 심리의 적법성에 대한 감독, 재판에서의 공소의 유지, 국가이익

의 보호를 목적으로하는 소송의 법원에의 제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원에의 이의신청을 행한다.

러시아연방검찰총장 및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사는 법원의 감독하에 자기의 활동을 수행한다.

러시아연방검찰총장은 러시아연방의 최고사법존재의 제안에 따라 제출된 러시아연방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연방평의회에 의하여 임명 및 해임된다.

第8章 地方自治

제127조 시, 지구, 촌 기타의 지역단위에서 지방자치가 보장된다.

지방자치는 공화국·지방·주·연방직할시·자치주·자치관구에 설정된 지역단위의 경계내에서 실시된다.

지방자치의 지역적 경계의 변경은 주민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주민의 민족적·인종적 구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족지구 기타 민족·지역단체를 형성할 수 있다.

민족·지역단위는 당해 연방구성주체의 합의에 따라 채택된 연방법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제128조 지방자치기관은 독자적으로 지방예산, 지방세 및 수수료를 승인하고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그 관할로부터 제외되지 아니하거나 국가기관에 이관되지 아니한 지역적 의의를 가진 임의의 경제·사회 기타의 문제를 해결한다.

제129조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지방자치를 제한할 수 없다.

지방자치기관은 자기의 일부 권한을 사회적 자주관리의 말단지역집단(페르비치니·초리트리아리니·코레크츠프)에 위임할 권리를 가진다.

제130조 지방자치는 주민이 직접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각종 형태(주민 투표, 집회, 회합)로 사회적 자주관리의 말단지역집단의 기관을 통하여

실현되며, 지방대리인과 집행기관, 치안판사에 의하여 실현된다.
주민은 민족(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기타의 특징을 가진 지역단위에서
는 지방의 전통과 관습에 합치하는 지방자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第9章 憲法의 修正과 改正

제131조 헌법 제1편의 수정과 개정에 관한 규정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러시아연방대통령, 러시아연방정부, 연방구성주체 및 연방의회의 어느
1院의 대의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대의원그룹이다.

결정의 선택에는 연방의회 각원의 회의에서 각각의 원의 대의원총수의
5분의 4의 출석을 요한다.

헌법의 수정 또는 개정에 관한 결정은 연방의회 각원의 대의원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이에 찬성한 경우에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정 또는
개정에 관한 결정은 연방구성주체의 3분의 2이상이 이를 비준한 경우에
발효한다.

제132조 헌법 제1장의 규정은 수정 또는 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1장의 규정의 개정에 관한 제안이 연방의회 각원의 대의원총수
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지지받은 경우, 연방의회는 해산되고 헌법
제정회의가 소집된다. 헌법제정회의는 헌법의 불변성을 확인하거나 또
는 새로운 러시아연방헌법의 준비를 선언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정한다.

제133조 러시아연방의 구성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제56조의 개정은 러시
아연방에의 편입에 관한 또는 그 구성에 있어서의 새로운 연방구성주체
의 형성에 관한 연방의 헌법적 법률에 기초하여 실시한다.

第2編

- 『러시아聯邦의 聯邦國家權力機關과 러시아 联邦을 구성하는 主權共和國權力機關과의 管轄對象 및 權限의 分配에 관한 條約』

우리들,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주권공화국국가권력기관의 전권대표는,

러시아연방의 제민족의 역사, 전통, 문화, 언어, 민족적 존엄에 경의를 표명하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러시아연방의 제민족의 국가적 통일의 유지,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의 영토보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며,

민족간의 협조, 신뢰, 상호이해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민족적 소속과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인간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우선, 민족의 자결권을 실현하면서, 자발적인 권한구분과 그 효과적 실행을 기초로 하는 연방관계의 질적 개혁을 지향하고,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주권공화국국가권력기관이, 자기의 권한범위내에서 그 영역내에서 러시아연방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입각하여,

러시아연방의 국가주권에 관한 선언,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주권공화국의 국가주권에 관한 선언, 러시아연방에 있어서의 연방체제와 연방관계의 문제에 관한 러시아연방인민대의원대회와 러시아연방최고회의의 결정을 지침으로 하며,

다음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제1조

1. 다음의 사항은 러시아연방국가권력기관의 관할에 속한다.
 - a) 러시아연방의 헌법과 연방법의 채택과 개정, 그 준수에 대한 감독.
 - b) 러시아연방의 연방체제와 영토
 - c)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조정, 소수민족의 권리의 조정과 보호, 러시아연방의 국적
 - d) 입법·집행·사법권력의 연방국가기관체계의 확립, 이러한 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규칙의 제정, 연방국가기관의 편성.
 - e) 연방국유재산과 그 관리
 - f) 연방정책의 원칙의 확립 및 러시아연방에서의 국가·경제·환경·사회·문화·민족적 발전의 분야에서의 연방프로그램

- g) 통일시장의 법적 원칙의 확립, 금융·외화·신용·관세의 조정, 통화의 발행, 가격정책의 원칙, 연방은행을 포함하는 연방의 경제 기관
 - h) 연방예산, 연방세와 수수료, 지역개발연방기금
 - i) 연방에너지체계, 원자력발전, 핵분열물질, 연방운수·도로망·정보·통신, 우주에서의 활동
 - j)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과 국제관계,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 전쟁과 평화의 문제
 - k) 러시아연방의 대외경제관계
 - l) 국방과 안전보장, 방위산업, 병기, 탄약, 군사장비, 기타의 군사자재의 매각·구입규칙의 결정, 핵분열물질, 독극물, 마약류의 생산과 그 사용규칙
 - m) 러시아연방의 국경선, 영해, 영공, 경제수역, 대륙붕의 지위와 방위
 - n) 재판제도, 검찰제도, 형법·형사소송·형사집행법, 사면과 감형, 민사·민사소송법, 중재소송법
 - o) 연방저축법
 - p) 기상예보, 규격, 도량형, 미터법체계, 시간산정, 측지측량과 지도제작, 공식통계와 회계
 - q) 러시아연방의 국가적 포상과 명예칭호
 - r) 연방적 국가사업
2.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권력기관은 러시아연방헌법과 연방법에 정한 범위, 형식에서 연방적 권한의 행사에 참여한다.
 3.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에서는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에 대표권이 보장된다.

제2조

1. 다음에 정한 사항은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국가권력기관의 공동관할에 속한다.
 - a)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의 헌법, 제법률과 러시아연방의 헌

법, 제법률과의 정합성의 보장

- b) 인간과 시민의 권리, 자유, 소수민족의 권리의 보호, 적법성, 법질서, 사회적 안전의 보장, 국경지대의 제도
 - c) 국유재산의 구분
 - d) 자연의 이용, 환경보호와 환경안전의 확보, 특별히 보호되는 자연 지역, 역사적·문화적 기념물의 보호
 - e) 양육, 교육, 과학, 문화, 체육, 스포츠의 전반적 문제
 - f) 보건문제의 조정, 가정·부모·아동의 보호, 사회보장을 포함하는 사회적 보호
 - g)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염병의 대책의 실시, 그러한 영향의 제거
 - h) 조세와 공과금의 일반적 원칙의 제정
 - i) 행정·행정소송·노동·친족법, 토지법·주택·수리·삼림법, 자하자원·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지적 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법적 관리
 - j) 재판제도, 변호사제도, 공증인제도, 치안기관의 인원
 - k) 소수민족공동체의 전통적인 거주환경과 전통적 생활양식의 보호
 - l) 지방자치를 조직하는 전반적 원칙의 확립
2.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은 이 조 제1항에 표시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의 원칙을 공포하고 여기에 따라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 국가권력기관은 법률과 기타의 법령의 채택을 포함하는 독자적인 법적 관리를 행사한다.
3. 이 조 제1항에 표시된 공동관리의 대상에 관한 법안은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에 송부되어 그 법안에 관계되는 제안은 러시아연방 최고회의에서 심의된다.

제3조

1.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국가)은 이 조약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의 관할에 양도되는(귀속하는) 권한을 제외하고 자기의 영토에서 국가적(입법적·행정적·사법적) 권한을 모두 가진다.
2.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은 러시아연방헌법, 러시아연방의 제

법률, 이 조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적·대외적 경제관계, 다른 공화국, 지방, 주, 자치주, 자치관구와의 협정의 독립적인 참가자가 된다.

3. 토지, 지하자원, 수역, 식물계와 동물계는 그 공화국의 영역내에 거주하는 제민족의 재산(소유물)이다. 토지, 지하자원, 수역, 기타의 천연자원의 소유, 이용, 관리의 제문제는 러시아연방의 법령의 원칙,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의 법령에 의하여 조정된다.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국가권력기관과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연방천연자원의 지위가 결정된다.
4.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기관에 의하여 러시아연방구성하의 공화국 영토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에는 그 공화국의 국가권력기관의 사전합의를 요한다. 비상사태의 선포의 근거가 되는 상황이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어느 1 공화국에 관계되는 경우, 그 공화국의 국가권력기관은 러시아연방대통령과 러시아연방최고회의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공화국의 국가권력기관에 의하여 선포되는 경우, 비상사태는 연방의 제법률에 따른다.

제4조

1.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은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국가권력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자기의 권한의 일부를 그러한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국가권력기관은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자기의 권한의 일부를 그들에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1.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의 공화국국가권력기관은 러시아연방의 제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에서 연방의 제법률 기타의 러시아연방 제법령을 집행한다.
2.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의 권력기관이 공포한 법적 문서는 그러한 기관, 시설, 공직자의 권한 범위내에서 러시아연방

의 전역에서 승인된다.

제6조

1.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은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국가권력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에 관한 법령을 공포할 수 없다.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국가권력기관에 의하여 러시아연방국가권력기관의 전속적 관할에 속하는 문제에 관한 법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연방의 제법률이 적용된다.
2.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국가권력기관과의 관계는 러시아연방헌법, 공화국헌법, 상호 존중과 상호 책임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분쟁은 러시아연방의 헌법과 제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칙상의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용하여 해결한다.
3. 이 조 제1항에 열거된 문제에 관한 분쟁, 이 조약 제2조에 열거된 공동관할대상에 속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러시아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7조 이 조약에 의하여 정한 관할대상과 권한의 구분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8조 이 조약은 그 채택일로부터 발효한다. 이 조약은 러시아연방인민 대의원대회에 의하여 승인된 후, 러시아연방헌법의 구성부분(독립된 編)이 된다. 러시아연방헌법의 이 編은 이 조약에 조인한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된다.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각 공화국은 이 조약에 조인하는 권리와 함께 러시아연방헌법과 그 공화국헌법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권한구분에 대하여 자기의 태도를 조정할 권리를 가진다.

○ 『러시아聯邦의 聯邦構成國家權力機關과 러시아聯邦의 地方, 州, 모스크바市, 상트페테스부르그市의 權力機關과의 管轄對象 및 權限의 分配에 관한 條約』

우리들,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의 지방, 주, 모스

크바시, 상트페터스부르그시의 국가권력기관의 전권대표는 러시아연방의 제민족의 역사, 전통, 문화, 언어, 민족적 존엄에 경의를 표명하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러시아연방의 제민족의 국가적 통일의 유지, 그 영토보전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인식하고 민족간의 협조, 신뢰, 상호이해의 달성과 강화를 목표로 하며, 민족적 소속, 거주지역, 기타의 사정에 관계없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우선적으로 실현함과 동시에 인간의 물질적 향상과 정신적 발전에 배려하고 권한의 이성적 구분과 권한의 효과적 행사에 기초하여 연방관계의 질적 개혁을 지향함과 동시에 러시아연방의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터스부르그시의 국가권력기관이 자기의 권한 범위내에서 러시아연방의 권력을 자기의 영역내에서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입각하며, 러시아연방의 국가주권에 관한 선언, 러시아연방에 있어서의 연방체제와 연방관계의 제문제에 관한 러시아연방인민대의원대회, 러시아연방최고회의의 제결정을 지침으로 하여 다음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제1조

1. 이하의 사항은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의 관할에 속한다.
 - a) 러시아연방의 헌법과 제법률의 채택과 수정. 그러한 절차준수에 대한 감독
 - b) 러시아연방의 연방체제, 구성, 영토와 그 보전, 새로운 지방, 주의 성립의 승인,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터스부르그시의 경계변경의 승인
 - c)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 및 러시아연방의 국적, 소수민족의 권리의 보호
 - d) 입법 · 행정 · 사법권의 연방기관체계의 확립. 그러한 조직과 활동의 규칙, 연방국가권력기관의 편성,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터스부르그시의 대의제 · 집행권력기관체계의 조직에 관한 전반적 규칙
 - e) 연방정책의 원칙의 결정. 러시아연방의 국가 · 경제 · 환경 · 사회 · 문화 · 민족적 발전의 분야에서의 연방프로그램
 - f) 연방국유재산과 그 관리

- g) 통일시장의 법적 원칙의 확립, 금융·외화·신용·관세의 조정, 통화의 발행, 가격정책의 원칙, 연방은행을 포함하는 연방의 경제 기관
 - h) 연방예산, 연방세와 수수료, 지역개발연방기금
 - i) 연방에너지체계, 원자력발전, 핵분열물질, 연방운수, 도로망, 정보·통신, 우주에서의 활동
 - j)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과 국제문제,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 전쟁과 평화의 문제
 - k) 러시아연방의 대외경제관계
 - l) 국방과 안전보장, 방위산업, 병기, 탄약, 군사장비 기타 군사자재의 매각, 구입규칙의 결정, 핵분열물질, 독극물, 마약류의 생산과 그 사용의 규칙
 - m) 러시아연방의 국경선, 영해, 영공, 경제권, 대륙붕의 지위, 제도 방위
 - n) 재판제도, 검찰제도, 형사·형사소송·형사집행법, 사면과 감형, 민사민사소송·중재소송법, 행정소송·노동·친족법, 지적 소유권의 법적 관리
 - o) 연방저축법
 - p) 기상예보, 규격, 도량형, 미터법체계, 시간의 산정, 측지측량, 지도제작, 공식통계와 회계
 - q) 연방국가사무
 - r) 러시아연방의 국가적 포상과 명예칭호
2. 러시아연방의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테스부르그시의 권력기관은 러시아연방헌법, 제법률에 정한 범위와 형성에 있어서 연방권한의 행사에 참가한다.
3.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테스부르그시에서는 러시아연방의 연방 대의제국가권력기관에서의 대표권이 보장된다.

제2조

1. 다음의 사항은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의 지

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터스부르그시의 국가권력기관과의 공동관할에 속한다.

- a)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터스부르그시의 규약, 기타의 규범적 법령과 러시아연방헌법, 제법률과의 정합성의 확보
 - b)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 적법성, 법질서, 사회적 안전의 보장
 - c)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터스부르그시에 있어서 영역구분과 지방자치조직의 일반원칙의 확립
 - d)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터스부르그시에 있어서의 과세의 일반원칙의 확립
 - e) 변호사제도, 공증인제도
 - f) 소수민족공동체의 고래로부터의 거주환경과 전통양식의 보호
 - g) 행정·주택법, 토지·水利·삼림법, 지하자원,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h) 양육·교육·과학·체육, 스포츠의 전반적인 문제
 - i) 보건, 가족·부모·아동의 보호, 사회보장을 포함하는 사회적 보호
 - j) 자연이용, 환경보호와 환경적 안전보장, 특별히 보호되는 자연지역, 역사적·문화적 기념물의 보호
- k) 검역, 대형사고·자연재해·전염병대책과 그 영향의 제거
- 1) 러시아연방헌법에 의하여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의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터스부르그시와의 공동관할에 이관된 기타의 권한
 2.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은 이 조 제1항에 열거한 문제에 관하여 법률의 원칙을 공포하고 여기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터스부르그시의 국가권력기관은 그 권한 범위내에서 법령을 공포하고 자기의 법적 관리를 실행한다.
 3. 이 조 제1항에 열거한 공동관할의 대상에 관한 법률은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터스부르그시에 송부된다.

제3조

1. 이 조약 제1, 2조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의 관할,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테스부르그시의 국가권력기관과의 공동관할에 이관되지 아니한 권한은 러시아연방헌법에 의거하여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테스부르그시의 국가권력기관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행사된다.
2.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테스부르그시는 러시아연방의 헌법과 제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국제관계와 대외경제관계,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지방, 주, 공화국, 자치주, 자치관구와의 협정의 독립적인 참가자가 된다.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테스부르그시의 국제관계와 대외경제관계의 조정은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테스부르그시의 국가권력기관과 공동으로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이 행한다.
3. 토지, 지하자원, 수역, 삼림, 기타의 천연자원의 소유, 이용, 관리에 관한 문제는 러시아연방의 법률의 원칙,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테스부르그시의 법령에 의하여 조정된다.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테스부르그시의 국가권력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연방천연자원의 지위가 결정된다.
4.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테스부르그시의 비상사태의 선포는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테스부르그시의 국가권력기관에 통보되고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에 의하여 실시된다.

제4조

1.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은 러시아연방헌법 및 제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테스부르그시의 국가권력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자기의 권한의 일부를 그들의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테스부르그시의 국가권력기관은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자기의 권한의 일부를 연방국가권력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제5조

1.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테스부르그시의 국가권력기관은 러시아연방의 제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테스부르그시에서의 연방의 제법률, 기타 제법령을 집행한다.
2.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 자치주, 자치관구의 국가권력기관, 시설, 공직자에 의하여 공포된 법적 문서는 그러한 기관, 시설, 공직자의 권한 범위내에서 러시아 전역에서 승인된다.

제6조

1.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테스부르그시의 국가권력기관은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의 관할에 이관된 문제에 관한 법령을 채택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은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테스부르그시의 국가권력기관의 관할에 이관된 문제에 관한 법령을 채택할 수 없다.
2.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테스부르그시의 국가권력기관에 의하여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의 관할에 이관된 문제에 관한 법령이 채택된 경우,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테스부르그시의 국가권력기관의 법령이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테스부르그시의 국가권력기관과 공동관할에 이관된 문제에 관하여 공포된 연방의 제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연방의 제법률이 적용된다.
3. 이 조 제1, 2항에 열거된 문제에 관한 분쟁은 러시아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7조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테스부르그시의 국가권력기관과의 관계는 러시아연방헌법, 상호 존중과 상호책임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분쟁은 러시아연방의 헌법과 제법령에 의하여 정한 규칙상의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용하여 해결된다.

제8조 이 조약에 정한 관할대상과 권한의 분배는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9조 이 조약의 규정은 그 정식채택에 관한 공동의 입법적 발의에 의하여 러시아연방헌법(기본법)의 編으로서 러시아연방인민대의원회대회에 제출된다.

○『러시아聯邦의 聯邦國家權力機關과 러시아 聯邦을 구성하는 自治州, 自治管區의 權力機關과의 管轄對象 및 權限의 分配에 관한 條約』

우리들,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의 자치주, 자치관구의 국가권력기관의 전권대표는,

러시아연방의 제민족의 역사, 전통, 문화, 언어, 민족적 존엄에 대한 경의를 표명하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러시아연방의 제민족의 국가적 통일유지, 러시아연방의 영토보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민족간의 협조, 신뢰, 상호 이해의 달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민족의 소속, 거주지역, 기타의 사정에 관계없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우선적으로 실현함과 동시에 인간의 물질적 향상과 정신적 발전에 배려하고 권한의 이성적 구분과 권한의 효과적 행사에 기초하여 연방관계의 질적 개혁을 지향함과 동시에 러시아연방의 자치주, 자치관구가 러시아연방의 권력을 그 권한범위내에서 자기의 영역내에서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입각하며, 러시아연방의 국가주권에 관한 선언, 러시아연방의 연방체제와 연방관계의 제문제에 관한 러시아연방인민대의원대회, 러시아연방최고회의의 제결정을 지침으로 하여 다음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제1조

1. 다음의 사항은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의 관할에 속한다.
 - a) 러시아연방의 헌법과 제법률의 채택과 수정, 그러한 절차준수에 대한 감독
 - b) 러시아연방의 연방체제, 구성, 영토와 그 보전, 새로운 지방, 주의 성립의 승인,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테스부르그시의 경계변경의 승인

- c)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 및 러시아연방의 국적, 소수민족의 권리의 보호
- d) 입법 · 행정 · 사법권의 연방기관체계의 확립. 그러한 조직과 활동의 규칙. 연방국가권력기관의 편성.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테스부르그시의 대의제 · 집행권력기관체계의 조직에 관한 전반적 규칙
- e) 연방정책의 원칙의 결정. 러시아연방의 국가 · 경제 · 환경 · 사회 · 문화 · 민족적 발전의 분야에서의 연방프로그램
- f) 연방국유재산과 그 관리
- g) 통일시장의 법적 원칙의 확립, 금융 · 외화 · 신용 · 관세의 조정, 통화의 발행, 가격정책의 원칙, 연방은행을 포함하는 연방의 경제 기관
- h) 연방예산, 연방세와 수수료, 지역개발연방기금
- i) 연방에너지체계, 원자력발전, 핵분열물질, 연방운수, 도로망, 정보 · 통신, 우주에서의 활동
- j)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과 국제문제,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 전쟁과 평화의 문제
- k) 러시아연방의 대외경제관계
- l) 국방과 안전보장, 방위산업, 병기, 탄약, 군사장비 기타 군사자재의 매각, 구입규칙의 결정. 핵분열물질, 독극물, 마약류의 생산과 그 사용의 규칙
- m) 러시아연방의 국경선, 영해, 영공, 경제수역, 대륙붕의 지위, 제도 방위
- n) 재판제도, 검찰제도, 형사 · 형사소송 · 형사집행법. 사면과 감형, 민사민사소송 · 중재소송법, 행정소송 · 노동 · 친족법, 지적 소유권의 법적 관리
- o) 연방저축법
- p) 기상예보, 규격, 도량형, 미터법체계, 시간의 산정, 측지측량, 지도 제작, 공식통계와 회계
- q) 연방국가사무

- r) 러시아연방의 국가적 포상과 명예칭호
- 2.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자치주, 자치관구의 권력기관은 러시아연방의 헌법과 제법률에 정한 범위와 형식으로 연방의 권한행사에 참가한다.
- 3.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자치주, 자치관구에서는 러시아연방의 연방 대의제 국가권력기관에서의 대표권이 보장된다.

제2조

- 1.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의 자치주, 자치관구의 국가권력기관과의 공동관할에 속한다.
 - a)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자치주, 자치관구의 규범적 법령과 러시아연방헌법, 제법률과의 정합성 확보
 - b)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 적법성, 법질서, 사회적 안전의 보장
 - c)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자치주, 자치관구의 영역구분과 지방자치 조직의 일반원칙의 확립
 - d)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자치주, 자치관구에 있어서의 과세의 일반 원칙의 확립
 - e) 변호사제도, 공증인제도
 - f) 소수민족공동체의 전통적인 거주환경과 전통양식의 보호
 - g) 행정·주택법, 토지·수리·삼림법, 지하자원,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h) 양육·교육·과학·체육, 스포츠의 전반적인 문제
 - i) 보건, 가족·부모·아동의 보호, 사회보장을 포함하는 사회적 보호
 - j) 자연이용, 환경보호와 환경적 안전보장, 특별히 보호되는 자연지역, 역사적·문화적 기념물의 보호
 - k) 검역, 대형사고·자연재해·전염병대책과 그 영향의 제거
 - l) 러시아연방헌법에 의하여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자치주, 자치관구와의 공동관할에 이관된 기타의 권한

2.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은 이 조 제1항에 열거한 문제에 관하여 법률의 원칙을 공포하고 여기에 따라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자치주, 자치관구는 그 권한 범위내에서 법령을 공포하고 자기의 법적 관리를 실행한다.
3. 이 조 제1항에 열거한 공동관할의 대상에 관한 법률은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자치주, 자치관구에 송부된다.

제3조

1. 이 조약 제1, 2조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의 관할,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자치주, 자치관구의 국가권력기관과의 공동관할에 이관되지 아니한 권한은 당해 자치주, 자치관구의 제안에 의거하여 러시아연방 최고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러시아연방의 자치주와 개개의 자치관구에 관한 법률, 기타 러시아연방의 제법령에 의하여 결정되며, 러시아연방헌법에 자치주, 자치관구의 국가권력기관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행사된다.
2.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자치주, 자치관구는 러시아연방의 헌법과 제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국제관계와 대외경제관계,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지방·주·공화국·자치주·자치관구와의 협정의 독립적인 참가자가 된다.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자치주, 자치관구의 국제관계와 대외경제관계의 조정은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페테스부르그시의 국가권력기관과 공동으로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이 행한다.
3. 토지, 지하자원, 수역, 삼림, 기타의 천연자원의 소유, 이용, 관리에 관한 문제는 러시아연방의 법률의 원칙, 제법전, 제법률,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자치주, 자치관구 제법령에 의하여 조정된다.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자치주, 자치관구의 국가권력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천연자원의 소유와 이용의 역사적으로 형성된 형태의 존속과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위가 결정된다.

제4조

1.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은 러시아연방헌법 및 제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자치주, 자치관구의 국가권력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자기의 권한의 일부를 그들의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자치주, 자치관구의 국가권력기관은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자기의 권한의 일부를 연방국가권력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제5조

1.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자치주, 자치관구의 국가권력기관은 러시아연방의 제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자치주, 자치관구에서 연방의 제법률, 기타 제법령을 집행한다.
2.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지방, 주, 공화국, 자치주, 자치관구의 국가권력기관, 시설, 공직자에 의하여 공포된 법적 문서는 그러한 기관, 시설, 공직자의 권한 범위내에서 러시아 전역에서 승인된다.

제6조

1.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자치주, 자치관구의 국가권력기관은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의 관할에 이관된 제문제에 관한 법령을 채택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은 이 조약에 의하여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자치주, 자치관구의 국가권력기관의 관할에 이관된 문제에 관한 법령을 채택할 수 없다.
2.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자치주, 자치관구의 국가권력기관에 의하여,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의 관할에 이관된 문제에 관한 법령이 채택된 경우, 자치주, 자치관구의 국가권력기관의 제법령이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자치주, 자치관구의 국가권력기관과 공동관할에 이관된 문제에 관하여 공포된 연방의 제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연방의 제법률이 적용된다.

3. 이 조 제1, 2항에 열거된 문제에 관한 분쟁은 러시아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7조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자치주, 자치관구의 국가권력기관과의 관계는 러시아연방헌법, 상호 존중과 상호책임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분쟁은 러시아연방의 헌법과 제법령에 정한 규칙상의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용하여 해결된다.

제8조 이 조약에 정한 관할대상과 권한의 구분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9조 이 조약의 규정은 그 정식채택에 관한 공동의 입법적 발의에 의하여 러시아연방헌법(기본법)의 編으로서 러시아연방인민대의원회대회에 제출된다.

第 3 編 經過規定

1. 러시아연방헌법(기본법)은 1993년 ()월 ()일 공포되어 그날로부터 발효한다.
2. 러시아연방영역내에서 1993년 ()월 ()일까지 효력이 있는 제법률과 제법령은 그것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폐지 또는 개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3. 死刑은 러시아연방형법이 개정될 때까지, 러시아연방형법 제102조에 열거된 중대한 사정에 있어서 고의의 살인, 러시아연방형법 제66, 67, 68, 77, 191, 240조에 열거된 범죄행위중의 고의의 살인, 인간의 말살에 대하여 배심의 판결에 의하여서만 적용된다.
4. 선택적 병역에 관한 연방법이 채택될 때까지는 자기의 신앙을 이유로 러시아군에서의 복무를 거부하는 시민은 의무병역기간중, 러시아연방 정부가 결정하는 의료·건설·구조·통신, 기타의 국가기관에 파견된다.
5. 러시아연방대통령은 헌법 제70, 73-83조에 의거하여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임기중에, 국가원수로서 활동한다.

6. 최초로 소집된 연방의회의 선거는 「연방의회의 선거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에 의거하여 199()년 ()월 ()일에 실시한다.

연방의회가 소집될 때까지, 국가의회의 권한은 헌법의 발효 시점까지 러시아연방 최고회의가 그 구성에 있어서 행사하지만, 연방의회의 권한은 각 연방구성주체의 입법(대의제)기관의 대표 각 1인과 연방주체의 원수(행정부의 장)로 구성되는 연방구성주체회의가 행사한다.

7. 헌법의 발효당시 활동중인 러시아연방각료회의 = 정부는 그 임기의 만료 또는 헌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해산될 때까지 헌법 제105조 및 제108조 내지 제112조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다.

8. 러시아연방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최고법원, 러시아연방최고중재법원은 이 헌법이 발효시점까지 헌법에 정하고 이 헌법이 채택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권한에 의거하여 각각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최고법원, 연방최고중재법원로서 사법권을 행사한다.

헌법이 발효한 날부터 연방법원의 임무는 헌법 제12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최초로 소집되는 연방의회에 의하여 연방법관이 임명될 때까지 연방 최고재판기관은 연방헌법재판소 소장과 부소장, 연방최고법원 원장과 부원장, 연방최고중재법원 원장과 부원장의 임명에 권한을 행사한다.

9. 헌법 제1편에 열거된 러시아연방인민대의원회대회와 러시아연방최고회의, 러시아연방헌법재판소의 권한은 각각 연방의회, 연방헌법재판소에 속한다.

10. 러시아연방과 연방조약에 조인하지 아니한 연방주체와의 관계는, 헌법을 기초로 하며, 헌법에 의하여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의 관할에 이관된 범위외에는 당해 연방구성주체의 국가권력기관이 그 영역내에서 독립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형성된다.

외국법제동향분석 93-3 러시아연방헌법(안)

1993年 10月 20日 印刷

1993年 10月 25日 發行

發行人 張 明 根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株) 韓國컴퓨터産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 : 722-2901/3, 722-0163/5

등록번호 : 1981. 8.11 제 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500원

